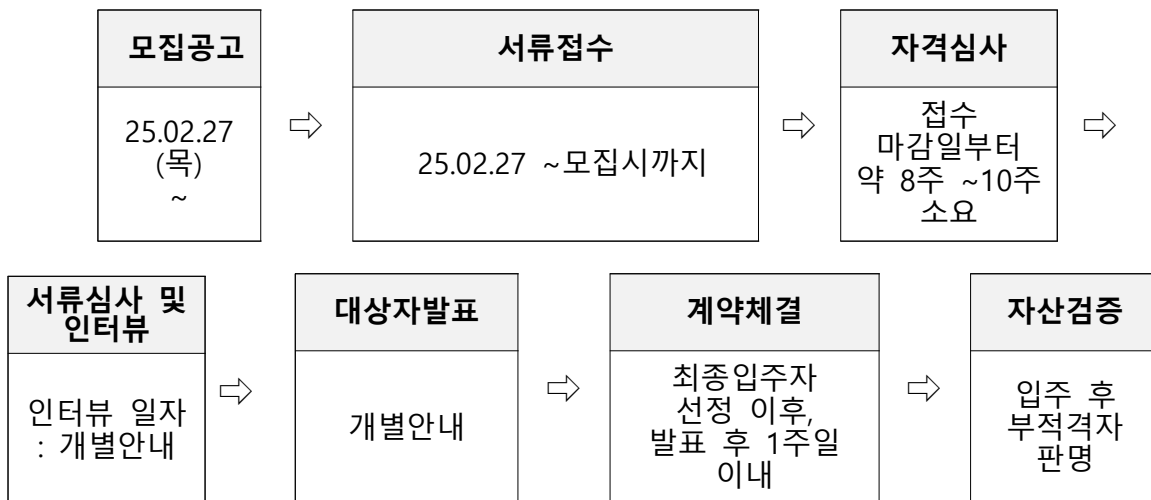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주택_공릉점 입주자 모집 공고

-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운영기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4년도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2024년도 변경 자산·자동차가액 기준 반영)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외국인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내 퇴거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 자격심사 조회의 소요시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주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92가길 35(공릉동)	
주택정보	
사용 승인일	2021.1.25
층수	4층
주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보안시설	CCTV, 비디오폰 현관문, 소화기

	공급대상		면적(㎡) 전용	임대조건(원)		비고
	호수	구분		보증금	임대료	
1	101호	개방형원룸	19.4900	커뮤니티룸 운영		
2	102호	개방형원룸	20.8100	커뮤니티룸 운영		
3	201호	개방형원룸	19.4900			모집완료
4	202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5	203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6	204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7	205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8	206호	개방형원룸	20.8100			모집완료
9	207호	개방형원룸	16.7700	5,469,000	230,900	자격검증중
10	208호	개방형원룸	16.7700			모집완료
11	209호	개방형원룸	16.8900			모집완료
12	301호	개방형원룸	19.4900			모집완료
13	302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14	303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15	304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16	305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17	306호	개방형원룸	20.8100			모집완료
18	307호	개방형원룸	16.7700			모집완료
19	308호	개방형원룸	16.7700			모집완료
20	309호	개방형원룸	16.8900			모집완료
21	401호	개방형원룸	19.4900	6,463,000	273,500	모집중
22	402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23	403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24	404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25	405호	개방형원룸	17.0500			모집완료
26	406호	개방형원룸	20.8100			모집완료

설치 및 부대시설	
개별시설	
기본옵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인덕션(2구), 신발장, 디지털도어락, 비디오폰
난방방식	개별난방(도시가스)
관리비	5만원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개별공과금 별도)
비고	각 호실별 다용도실 (보일러 등 위치)
공용시설	
(입주자들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룸(2호)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커피머신, 인터넷, 복합기 등
1F	무인택배함, CCTV,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차장

호수/모집	특징
1호 모집	<p>청년 · 소상공인 · 소셜벤처 창업자 · 창업준비생 · 대학생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m 이내(직선거리) 7호선 공릉역, 도보 5분 - 500m 이내 주민센터, 초·중·고·대학교, 공원 위치 - 은행, 주유소, 편의점, 병원, 음식점, 마트 등 편의시설 인근 위치 - 250m 이내 경춘선 숲길공원 및 상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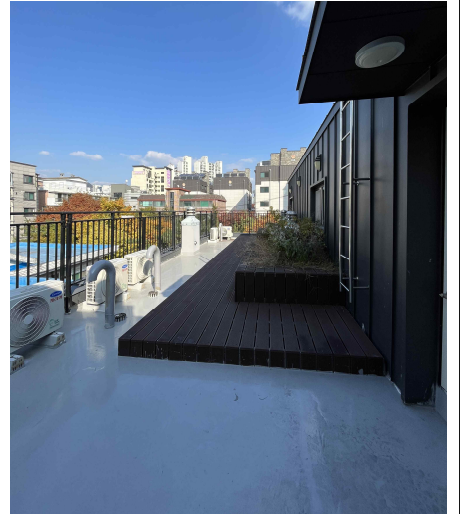
전경 및 내부



건물 정면



1층 공용공간



옥상



주방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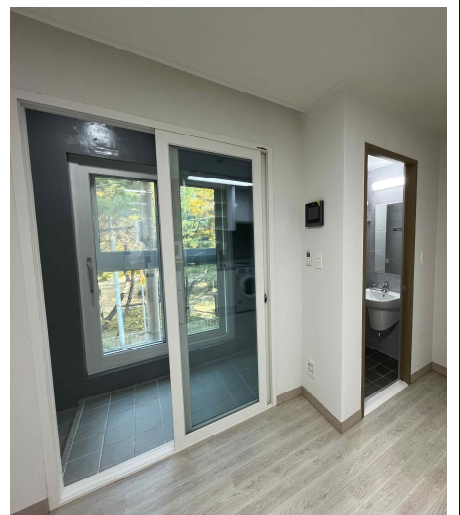
화장실



내부1



내부2



내부3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4,179,557원	5,957,283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기존주택등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기존 100% 금액(3,482,964원)에 가산)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산기준)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구분	기준 금액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 행복주택(청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

입주자 선정기준

※ 운영기관(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자체 선정 기준에 따름

■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에 **입주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 **LH 자격·자산 검증** 서류 심사 진행

■ 입주신청자 선정 기준 적용 **서면 및 면접인터뷰 진행**

○ 입주자 선발 기준 및 평가

- 전체 배점 비율 : LH입주자격 70%, 자체선정기준 30% 적용
-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 설정 및 적용
 - 서류 및 면접심사 진행 후 최고 득점자 순 선발
- 평가 항목 및 배점 : 100점 (서면 80점, 면접 20점)

구분	평가요소	채점기준	배점 기준	총점
		자유형식		
서면심사	· 창업 사업계획 적정성 및 취업 계획 구체성	· 창업을 꿈꾸게 된 배경 및 창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계획 ·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해 현재 생각하는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 사회적 주택에 입주하는 창업가로서 희망사항 및 기여 가능한 점	30	100
	· 공동체에 대한 생각 및 관련 활동 기간	· 공동체에 대한 본인의 생각 · 공동체 생활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 · 조직 내부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30	
	· 자기소개서	· 입주 신청동기, 관심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보고 싶은 활동 등 자유롭게 작성	20	
면접심사	· 창업 사업계획 적정성 및 취업 계획 구체성 · 공동주거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도 · 공릉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및 이해도 · 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지속성, 책임감		20	

※ 서면심사는 개조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각 항목당 150자 내외)

※ 면접심사는 전화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 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순번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신청한 운영기관 외 타 운영기관의 사회적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격검증은 기존 자료로 대체 하며 운영기관별 별도 선정 기준만을 심사하여 입주

※ 단, 기존 예비입주자가 대기하고 있는 호를 제외한 공실에 입주 가능

※ A운영기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B운영기관 입주를 희망할 경우 A, B기관 모두에 이를 통보하고 두 기관이 협의 가 된 경우에만 가능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절차	일정	내용 및 공지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5.02.27. ~	NH홈페이지/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서류접수	모집공고일로부터~	이메일 접수	
자격심사	접수 마감일부턴 약 8~10주 소요		
서면심사 및 인터뷰	개별 안내		
입주자 발표	개별 안내		
계약체결	개별 안내		발표 후 1주일 이내 계약체결
입주	입주자와 협의 후 진행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입주신청서 및 각종 동의 서식 작성 후 서류 스캔
이메일(socialhousing@seempower.kr)로 발송
 - 메일 제목 : 입주신청서_공릉점_이름 (ex.입주신청서_공릉점_홍길동)
 - 파일명 : 이름_서류명 (ex. 홍길동_입주신청서, 홍길동_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제출 서류 원본은 계약시 제출
- 문의 : 02-999-3267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주택본부
 - socialhousing@seempower.kr 주택관련 문의
 - <https://gongzonhouse.com/> 공존하우스 홈페이지

6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유형(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출력 후 내용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한부모가족, 일반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제출 서류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2.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입주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전원 작성 	
활동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전원 작성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자산 소명은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일반①, ②)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조회결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 됩니다.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임대인(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입주자격 청년</td> <td style="width: 50%;">최대 거주기간 6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기간 중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청년	최대 거주기간 6년
입주자격 청년	최대 거주기간 6년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여부 및 가능범위는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문의사항	<p>운영기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42길 18, 4층</p> <p>운영기관 연락처 : 02-999-3267</p>
------	--

2025. 02. 27.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 **확인방법**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축육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금융자산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